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[]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[]
살생물물질 승인 · 변경승인 []
살생물제품 승인 · 변경승인 [] **권리 · 의무 승계통보서**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승계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 (생년월일)	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	
		(팩스번호:)	
	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또는 승인번호		
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번호			
피승계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 (생년월일)	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	
		(팩스번호:)	
	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또는 승인번호		
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번호			
승계구분	[] 상속	[] 양도·양수	[] 합병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인

(서명 또는 인)

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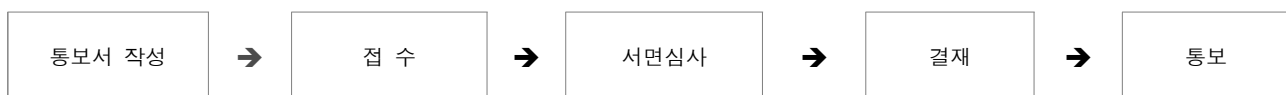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·승인 나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.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통보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통보인

처리기관: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